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9월 3일, 검단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되는 검단구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사무
- 아이돌보미 모집·채용 및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의 안전관리

-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 그밖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서비스 제공 경력 및 능력, 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보미 확보 및 양성 능력, 서비스 질 관리 및 민원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소요예산
-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17,307,804천원 규모
  · 국비: 11,791,783천원
  · 시비: 2,858,156천원
  · 구비: 2,657,865천원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정홍선】

○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설치되는 검단구 아이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관리업무 등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3일, 이현주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이현주 의원】

1)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 통합지원 사업 및 사업비 지원(안 제5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안 제6조 및 제7조)

○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및 제13조)

○ 개인정보 보호, 포상 및 사무의 위탁(안 제14조부터 제16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7조)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 정홍선】

○ 돌봄통합지원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계획 수립, 대상자 발굴 및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점검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설치 근거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여 **"원안 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수정의결' 동의

○ 제16조에서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의 부분을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로 수정하여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함.

○ 보건복지부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중 예시 조례안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 중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를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6조(사무의 위탁) ----------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법 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3일, 이현주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이현주 의원】

1) 제안이유

○ 2026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에 따라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를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내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정홍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이는 별도의 협의체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취지와 률상 통합운영 규정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3일, 홍순서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홍순서 의원】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난 및 각종 위기상황에서의 구호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봉사회 회원”, “봉사회 사업”의 의미를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재난 관련 구호사업,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 · 안전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헌혈 및 헌혈 권장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정홍선】

○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수행하는 재난 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응급구호,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헌혈 등 공익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사의 재난 구호, 의료·혈액, 응급구호, 자원봉사,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사업 지원 및 보험 가입 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원안 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9월 3일, 검단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및 11호점 신규 설치에 따라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분	10호점	11호점
소재지	고산후로 249(힐스테이트 신검단센트럴)	독정로 57(인천검단LH 38단지)
면적	73.87㎡	111.7㎡
정원	20명	20명
종사자	2명	2명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돌봄서비스 운영 및 평가·모니터링
  - 돌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이용아동 모집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급·간식, 위생·건강 및 안전관리
  - 보호자 상담 및 운영위원회 운영
  -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소요예산

- 5년간 총 1,318,277천원
  - 국비 : 473,175천원
  - 시비 : 419,461천원
  - 구비 : 425,641천원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정홍선】

○ 본 동의안은 검단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및 11호점을 신규 설치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방법과 위탁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위탁 추진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9월 3일, 검단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2027년 1월 개소 예정인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분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
소재지	완정로 18, 한올메디컬센터 6층	완정로 18, 한올메디컬센터 6층
면적	125.62㎡	363.64㎡
종사자	5	6

○ 위탁기간 : 2027.1.1.~2031.12.31.(5년)

○ 위탁사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및 관리 전반
-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소요예산

- 5년간 총 10,555백만원
  - ・국비 : 2,850백만원
  - ・시비 : 2,596백만원
  - ・구비 : 5,108백만원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정홍선】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같은 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에 대한 상위법령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면서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개 모집을 통한 5년간의 민간 위탁 추진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정보 제공, 어린이집 컨설팅, 보호자 및 보육 교직원 상담・교육, 시간제 보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원안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검단·당하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9월 3일, 검단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노인장애인과장】

1)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검단노인복지관과 당하노인복지관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분	검단노인복지관	당하노인복지관
소재지	검단로 502번길 15-1	독정로 57, 3801동, 3802동
건물면적	2,674.23㎡	1,510.76㎡
기존 수탁기관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해구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027.1.1.~2031.12.31.(5년)

○ 위탁사무

- 노인복지관 운영 및 기본사업
-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평가 및 모니터링
-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그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수탁자 선정 방법

- 갱신(다만, 수탁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부적격 또는 위탁계약 협의 조건 미충족 시 공개 모집으로 선정 방식 변경)

○ 소요 예산

- 5년간 총 10,616백만원
  - ・시비 : 5,034백만원
  - ・구비 : 5,582백만원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정홍선】

○ 본 동의안은 검단노인복지관 및 당하노인복지관의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5년간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법적・행정적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및 5년의 위탁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9월 3일, 검단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노인장애인과장】

1) 제안이유

○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호보센터의 위탁 계약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여,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성인발달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개인 맞춤별 사회·교육 재활 프로그램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 과인지 및 신체기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분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완정로 153, 4층
면적	229.32㎡
정원	15명
종사자	5명
기존수탁법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위탁기간 : 2026.11.10.~2031.11.9.(5년)

○ 위탁사무

-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 사회·교육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및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그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 모집

○ 소요 예산

- 5년간 총 1,877백만원
  - ·시비 : 981백만원
  - ·구비 : 895백만원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정홍선】

○ 본 동의안은 기존 구립서로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향후 5년간 시설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

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른 민간 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주간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는 점에서 민간 위탁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단구 민간 위탁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사무로서 민간 위탁의 적정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3일
나선희, 김남원, 박병빈, 이현주, 이향미, 한규창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나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검단구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장애인 고용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구청장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구매 실적의 점검·분석 및 구매 목표 미달 기관에 대한 구매 확대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구매 실적 및 우수사례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정홍선】

○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취지를 검단구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매 실적 점검·분석 및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21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9월 3일, 검단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3일 위원회 회부
다. 상 정 일 자: 제3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도시위원회(2026. 9.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환경관리과장】

1)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기본계획 등에 반영(안 제8조 제3항 신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위촉직 위원 자격 신설(안 제11조 제3항 제2호)

○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정비(안 제17조)

○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3. 사무과장 검토보고 요지

【사무과장: 정홍선】

○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한 점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인권적 측면과 지역 맞춤형 적응 정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검토"**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 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원안의결' 동의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